#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23

발의연월일: 2024. 7. 29.

발 의 자:권칠승·민병덕·송옥주

임호선 · 김태선 · 이기헌

박해철 · 임미애 · 안태준

소병훈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에 있는 놀이터(이하 "학교놀이터"라 함)는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교육과 더불어 놀이, 운동 등을 위하여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학교놀이터는 많은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학교의 장이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해 야 하는 학교시설의 한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학교의 장이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학교시설에 학교놀이터가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것 임(안 제4조제1항).

법률 제 호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급식시설,"을 "급식시설, 놀이터(유치원·초등학교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한다),"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  |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 |  |  |  |
| 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   | 위생) ①             |  |  |  |
|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                   |  |  |  |
| 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체육   |                   |  |  |  |
| 장,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 <u>급</u>          |  |  |  |
|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   | 식시설, 놀이터(유치원·초등학  |  |  |  |
| 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 교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한다), |  |  |  |
|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기  |                   |  |  |  |
| ・채광・조명・온도・습도의      |                   |  |  |  |
| 조절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    |                   |  |  |  |
| 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 • |                   |  |  |  |
|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  |                   |  |  |  |
| 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     |                   |  |  |  |
| 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     |                   |  |  |  |
| 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   |                   |  |  |  |
| 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    |                   |  |  |  |
| 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   |                   |  |  |  |
| •관리하여야 한다.         |                   |  |  |  |
|                    |                   |  |  |  |
| ② ~ ⑦ (생 략)        | ② ~ ⑦ (현행과 같음)    |  |  |  |